**대한상공회의소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 단체보험료 견적용 설문서**

본 견적용 설문서를 아래의 대한상공회의소 공제센터로 보내주시면 보험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(Fax 또는 E-mail송부)

**• Fax: 070-7614-3422 • Tel: 02-6050-3866 • E-Mail: insure****@korcham.net**

**\* 표시 사항을 비롯한 본 설문서 내역은 보험료 산출을 위한 기초 자료이므로,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.**

|  |
| --- |
|  **I.** 가입업체 기본정보  |
| \*회 사 명 | 한 글 |  | 대 표 자 |  |
| 영 문 |  | 사업자등록번호 |  |
| 홈페이지주소 |  |
| \*보험담당자 | 부 서 |  | 성명/직위 |  / | 직 위 |  |
| 전화번호 | 사무실) | 팩스번호 |  |   |  |
| 핸드폰) | E-mail |  |  | Fax |  |
|  \*주 소 | 본 사 |  |  |  |  |
| 공 장 |  |  |  |  |
| 연간매출액 |  |  |  |  |
|  |
| **II.** 중대산업재해 설문 |
| ▶ 연간 임금 총액 (인건비) | (단위: 원) |
| * 소속 외 근로자 수 포함 시
 | (단위: 원) |
| ▶ 총 근로자 수 | (단위: 명) |  |
| * 소속 근로자 수
 | (단위: 명) |  |
| * 소속 외 근로자 수

(사업주가 사업(장)에서 사용하는 다른 사업주 소속의 파견, 하도급, 용역 등의 근로자) |  (단위: 명) |  |
| ▶ 업종(대분류 /중분류) \_ 산재가입기준 |  |
| ▶ 총자산 | (단위: 원) |
|  |
| **III.** 중대시민재해 설문 |
| ▶ 업종(대분류 /중분류) \_ 국세청기준 |  |
| ▶ 총자산 | (단위: 원) |

\* 업종 대분류가 제조업인 경우 아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|  |  |
| --- | --- |
| 구분 | 내용 |
| 제품 및 원재료명 |  |
| 고위험 품목 포함 여부(반드시 체크) | □ 항공기 및 관련 부품, □ 완성차 및 관련 부품 □ 타이어, □ 헬맷, □ 철도 및 철로용 신호장치, □ 의약품 및 의료기기, □ 담배, □ 혈액 등 인체추출 물질, □ 농약 및 제초제, □폭죽, 탄약, 화약 등 폭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 |
| **Ⅳ.** 보험가입조건 |
| **\* 중대재해위험** | ▶ 총보상한도액 | □5억 □10억 □20억 □30억 □50억 **□100억(최대)** |
| ▶ 자기 부담금 | **없음** |
| ▶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| **필수선택 (단, 자기부담금: 손해액의 20%)** |
| ▶ 담보범위 (선택가능) | □ 중대산업재해 □ 중대시민재해 |
| **\* 업무상 형사방어비용 특약** | □예 □아니오 **(보상한도액: 보통약관 보상한도의 30% / 자기부담금 없음)** |
| **\* 위기관리비용 특약** | □예 □아니오 **(보상한도액: 보통약관 보상한도의 5%(단 1억원 이하) / 자기부담금 없음)** |
| **\* 공중교통수단보장확대 특약** | □예 □아니오 |
| **\* 오염손해보장확대 특약** | □예 □아니오 |
| **\* 배상책임보장제외 특약** | □예 □아니오 |

※ 본 보험가입질문서는 보험료 산정 및 보험가입의 기초 자료로만 이용되며,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외부기관 및 타인 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합니다.

※ 상기 내역은 보험료 산출을 위한 기초 자료이므로,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.

**년 월 일**

**작성자 (인)**

\* 별첨1 : UW 할인할증 계수 (중대산업재해)

|  |
| --- |
| **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** |

|  |  |
| --- | --- |
|  |  |
|  |
|  |
|  |  |
|  |  |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구분 | 내용 | 응답 | 체크 |
| 관련법 위반 | 최근 3년내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| 없음 | 　 |
| 1회 | 　 |
| 2회 | 　 |
| 3회 이상 | 　 |
| 소송 여부 |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계류중인 소송 여부 | 없음 | 　 |
| 1건 | 　 |
| 2건  | 　 |
| 3건 이상 | 　 |
| 사망 여부 | 최근 3년내 산업재해 관련 사망자 여부 (3년 누적기준) | 없음 | 　 |
| 3명 이하 | 　 |
| 10명 이하 | 　 |
| 11명 이상 | 　 |
| 산재 부상 | 최근 3년내 산업재해 관련 부상 인원 여부 (3년 누적기준) | 10명 이하 | 　 |
| 30명 이하 | 　 |
| 50명 이하 | 　 |
| 51명 이상 | 　 |
| 산재 질병 | 최근 3년내 산업재해 관련 질병 인원 여부 (3년 누적기준) | 5명 이하 | 　 |
| 10명 이하 | 　 |
| 20명 이하 | 　 |
| 21명 이상 | 　 |
| 근로자 연령 | 전체 근로자 중 60대 이상 근로자 비중 | 20% 미만 | 　 |
| 30% 미만 | 　 |
| 40% 미만 | 　 |
| 40% 이상 | 　 |
| 근로성숙도(1년) | 전체 근로자 중 1년 미만 근로자 비중 | 10% 미만 | 　 |
| 15% 미만 | 　 |
| 20% 미만 | 　 |
| 20% 이상 | 　 |
| 직원 안전교육 | 산업안전보건법 대비 교육시간 | 3배 이상 | 　 |
| 2배 이상 | 　 |
| 1배 초과 | 　 |
| 1배 이하 | 　 |
| 외주 안전교육 | 하청직원 작업 전 (1) 안전교육 실시, (2) 점검표 작성 | 실시O, 작성O | 　 |
| 실시O, 작성X | 　 |
| 실시X, 작성O | 　 |
| 실시X, 작성X | 　 |
| 야간야외작업 | 자율점검표 작성 및 긍정 비중 | 긍정비율 90% 이상 | 　 |
| 긍정비율 70% 이상 | 　 |
| 긍정비율 50% 이상 | 　 |
| 긍정비율 50% 미만 | 　 |
| 하청 근로자 비중 | 전체 근로자 대비 외부하청 근로자 비중 | 10% 미만 | 　 |
| 20% 미만 | 　 |
| 30% 미만 | 　 |
| 30% 이상 | 　 |
| 안전보건점검횟수 | 보건 및 안전관리에 대한 자율점검\* | 1년에 4회 이상 | 　 |
| 1년에 3회  | 　 |
| 1년에 2회  | 　 |
| 1년에 1회  | 　 |
|  |  |  |  |
| \* 자율점검표 안내 |
| 1. 고용노동부 제공 자율점검표를 우선 적용하고, 해당 업종은 업종우선 |
|  - 폐기물처리업 자율점검표 |
|  - 창고 및 운수업 자율점검표 |
|  - 건설업 자율점검표 |
|  -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 |
|  -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|
| 2. 기업자체 자율점검표는 평가항목이 50개 이상인 것만 인정 (문서화가 되어 있어야 하며, Y/N 등 최소 평가기준 충족 필요) |

\* 별첨2 : UW 할인할증 계수 (중대시민재해)

|  |
| --- |
| **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** |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구분 | 내용 | 응답 | 응답 |
| 관련법 위반 | 최근 3년내 관련법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| 없음 | 　 |
| 1회 | 　 |
| 2회 | 　 |
| 3회 이상 | 　 |
| 소송 여부 | 현재 관련법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계류중인 소송 여부 | 없음 | 　 |
| 1건 | 　 |
| 2건  | 　 |
| 3건 이상 | 　 |
| 사망 여부 | 최근 3년내 시민재해 관련 사망자 여부  | 없음 | 　 |
| 3명 이하 | 　 |
| 10명 이하 | 　 |
| 11명 이상 | 　 |
| 시민 부상 | 최근 3년내 시민재해 관련 부상 인원 여부 | 10명 이하 | 　 |
| 30명 이하 | 　 |
| 50명 이하 | 　 |
| 51명 이상 | 　 |
| 시민 질병 | 최근 3년내 시민재해 관련 질병 인원 여부 | 5명 이하 | 　 |
| 10명 이하 | 　 |
| 20명 이하 | 　 |
| 21명 이상 | 　 |
| 조직 및 인원 | 중대시민재해를 전담하는 조직 여부 | 전담부서, 전담직원 O | 　 |
| 겸직부서, 전담직원 O | 　 |
| 겸직부서, 겸직직원 O | 　 |
| 부서배정 /직원배정없음 | 　 |
| 안전보건점검횟수 | 보건 및 안전관리에 대한 자율점검\* | 1년에 4회 이상 | 　 |
| 1년에 3회  | 　 |
| 1년에 2회  | 　 |
| 1년에 1회  | 　 |
| 모의훈련 | 응급사태 매뉴얼 보유 및 모의 훈련 실시 | 매뉴얼 X, 모의훈련 O | 　 |
| 매뉴얼 O, 모의훈련 O | 　 |
| 매뉴얼 X, 모의훈련 X | 　 |
|  |  |  |  |
| 자율점검표 안내 |
| 1. 공공기관에서 만든 안전관리 점검표를 우선 적용 |
|  - 환경부 제공, 중대재해처벌법 해설, 중대시민재해(원료, 제조물) 점검표 |
|  - 국토교통부 제공, 중대재해처벌법 해설, 중대시민재해(시설물) 점검표 |
|  -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등 세부점검표 |
|  -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제10호 서식 |
|  - 다중이용업소 실내공기질 점검표 |
|  - 고용노동부 제공, 자율점검표 |
|  - 폐기물처리업 자율점검표 |
|  - 창고 및 운수업 자율점검표 |
|  - 건설업 자율점검표 |
|  -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 |
|  -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|
| 2. 기업자체 자율점검표는 평가항목이 50개 이상인 것만 인정 (문서화가 되어 있어야 하며, Y/N 등 최소 평가기준 충족 필요) |

|  |  |
| --- | --- |
|  |  |
|  |
|  |

**※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보험 목적에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었을 때 회사는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,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**